

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47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2.

발 의 자 : 송옥주 · 홍기원 · 이원택
소병훈 · 위성곤 · 박지원
전종덕 · 박해철 · 이수진
한정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신안 여객선 사고 당시 조타실 내 선장의 판단 과정, 항로 선택, 통신 및 당직 수행 여부 등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음. 현행 「선박안전법」은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조타실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아, 사고 조사·책임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정보 확보가 미흡한 실정임.

이에 여객선을 비롯한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해 조타실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, 영상의 보존·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, 책임성 강화 및 안전운항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33조 및 제89조).

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선박소유자는 여객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조타실 내부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영상기록장치(이하 “조타실 영상기록장치”라 한다)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영상기록의 보존기간·이용범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제89조제2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1의2. 제3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타실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3조(조타실의 시야확보 등) ① ·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3조(조타실의 시야확보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선박소유자는 여객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 박의 조타실 내부에 해양수산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 준에 적합한 영상기록장치(이 하 '조타실 영상기록장치'라 한 다.)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 우 영상기록의 보존기간·이용 범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 항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제89조(과태료) ① (생략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~ 11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89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~ 11. (현행과 같음) 11의2. 제3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타실 영상기록장 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
12. ~ 28. (생략)	12. ~ 28. (현행과 같음)

③ ·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